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97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서지영 · 이현승 · 고동진
조승환 · 서천호 · 김미애
곽규택 · 정성국 · 정동만
박충권 · 성일종 · 나경원
이성권 · 최수진 · 김대식
박성훈 · 김도읍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

3항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과용 도서 대금
3.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4. 학교급식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